

광주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나623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우 담당변호사 박구용, 이영정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준영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4. 15.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52818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C이 피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금전 지급 약정은 437,620,25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7,422,4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7,422,4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부당이득금 67,996,912원 및 이에 대한 위 제1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제2예비적 청구로 추가한다고 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이고,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예비적 청구로서 제3채무자인 L의 전부금 8,781,900원과 O재단의 전부금 36,054,672원이 포함된 전부금 137,422,447원(위 L과 O재단의 전부금 외에 J재단으로부터 받은 전부금 3,623,040원, K재단으로부터 받은 전부금 30,000,000원, L으로부터 받은 전부금 17,597,220원, M재단으로부터 받은 전부금 20,543,935원, N으로부터 받은 전부금 20,821,6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원인 중 L과 O재단의 전부금에 관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음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로서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피고가 제3채무자 재단법인 T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부금 23,160,340원 부분은 당심에서 추가된 것이므로 위 전부금에 한하여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위에서부터 6행 중 “것은” 부분을 “것을”로, 밑에서부터 1행 중 “채권을” 부분을 “책임재산인 채권을”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그 주장을 추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제3채무자인 J재단을 상대로 2016. 4. 7.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당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총 726,564,178원이었는데, 피고가 2018. 8. 13. 제3채무자 N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당시 이미 청구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위 초과압류 이후에 피고가 2019. 3. 13. 제3채무자 재단법인 L을, 2019. 7. 8. 제3채무자 재단법인 T을, 2020. 2. 19. 제3채무자 의료법인 O재단을 각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모두 초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받은 전부금 합계 67,996,912원(위 L으로부터 전부받은 8,781,900원, 위 T으로부터 전부받은 23,160,340원, 위 O재단으로부터 전부받은 36,054,672원)을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C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7,996,9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집행절차에서 채권압류도 동산압류의 일종이므로 초과압류금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의 압류도 집행채권의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압류금지 규정은 채무자의 여러 개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존에 압류한 채권이 없고 압류할 채권이 하나일 때에는 그 채권액이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살피건대, 피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C의 채권은 모두 급여채권으로서 C이 근무하는 병원을 옮겨 다님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었던 기존의 급여채권 자체가 소멸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압류할 채권은 하나인 경우이므로,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한편, 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의 초과압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초과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규칙 제140조 제1항), 이러한 초과압류금지에 위반된 경우에도 그러한 채권압류명령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투어 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¹⁾. 그런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초과압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등 집행이의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제3채무자 재단법인 T으로부터 전부받았다고 주장하는 23,160,340원)는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채승원, 판사 유현주, 판사 신호승

금전 지급 약정

아래 도표 내용과 같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차전247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2016. 2. 25.자 금전 지급 약정

C은 피고에게 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편 제4권 제242면 참조